

전주지방법원 2022. 9. 21 선고 2022가단1391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대한민국

피고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6. F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2. 9. 21.

주 문

1. 가. 피고 A와 주식회사 G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1. 7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B와 주식회사 G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1. 7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다. 피고 C와 주식회사 G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1. 7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라. 피고 D와 주식회사 G 사이에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1. 7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마. 피고 E와 주식회사 G 사이에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1. 7. 체결된 매매계약을

취소한다.

바. 피고 F와 주식회사 G 사이에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4. 27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2. 가. 피고 A는 주식회사 G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 2018.

11. 23. 접수 제1213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나. 피고 B는 주식회사 G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 2018. 11.

23. 접수 제1213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다. 피고 C는 주식회사 G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 2018. 11.

23. 접수 제121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라. 피고 D는 주식회사 G에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 2018. 11.

23. 접수 제121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마. 피고 F는 주식회사 G에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9. 6. 5.

접수 제544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피고 E은 원고에게 8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이창섭

별지